

이사과학구

504조 권리 통지서

학부모는 504조에 의거 학부모의 권리를 이사과학구로부터 통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504조에 의거한 학부모와 자녀의 권리, 그리고 학부모가 학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갖게 되는 권리에 대한 통지입니다. 504조에 따른 권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학구 웹사이트의 학구 규칙 2162 및 2162P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특수 교육 서비스 적격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다음의 절차적 보호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special-education/guidance-families-special-education-washington-state/parent-and-student-rights>.

504조란?

일반적으로 "504조"라고 불리는 1973년 재활법의 504조는 장애로 인한 차별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연방법입니다. 504조는 장애 학생에게 비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교육 기회와 혜택을 보장합니다. 학생이 이 법에 해당하려면 하나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

자녀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습니다.
- 차별 없이 학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 학구의 비학업 활동 및 과외 활동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 받습니다.
-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적절한 최대한의 수준까지 교육 받습니다.
-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시설에서 교육과 서비스를 받습니다.
- 자녀가 학교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 및/또는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받습니다.
- 장애가 없는 아이의 부모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외에는 추가 비용 없이 교육 및 관련 지원 및 서비스를 받습니다.
- 필요한 경우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습니다.

자녀의 교육 기록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자녀의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 타당한 비용으로 사본을 발급 받습니다. 비용으로 인해 학부모가 기록을 검토하지 못할 경우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자녀 교육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구에 교육 기록 수정을 요청하십시오. 학구가 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학부모는 공정한 공청회를 요청하여 거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자녀의 교육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04조 절차

자녀는 학교가 504조에 의거한 자녀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학구가 자녀의 신원 확인, 평가 및 편성에 관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전에 통지를 받습니다.
- 자녀를 알고 평가 정보의 의미와 가능한 편성 사항을 아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종종 504팀이라고 불리는 모임에 의해 평가 및 편성 결정을 합니다.
- 적성과 성취도 시험, 교사 추천, 신체 조건, 의료 기록, 부모의 관찰 사항과 같은 다양한 출처를 기반으로 평가 결정을 합니다.
- 자녀의 최초 평가와 최초 편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합니다.

자녀가 504조에 의거 자격이 되는 경우, 자녀는 정기적인 재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편성에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가 504조에 의거하여 자녀의 신원 확인, 평가, 교육 프로그램 또는 편성과 관련한 학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절차적 보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보호 사항은 다음과 같은 여러분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1. 학구 또는 학구의 504조 조정 담당자에 비공식 민원이나 불만을 제기합니다.
2. 또한 중재 또는 공정하고 타당한 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와 자녀는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가 학부모를 대표합니다. 심리 요청은 학구의 504조 조정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Director of Student Interventions(학생 중재 책임자)
5150 220th Ave SE • Issaquah, WA 98029 • 425-837-7157

3. 504조에 따른 기타 권리의 공정한 심리 결정에 대한 검토는 학구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있습니다. 학부모는 미 교육부의 시민권국(OCR)에 차별 민원을 제기하거나 연방 법원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CR 민원은 학부모가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Office for Civil Rights Regional Office(시민권 사무소)
915 Second Ave, Room 3310, Seattle, WA 98174-1099.
전화: 206-607-1600/TDD: 206-607-1647

웹사이트: www.ed.gov/OCR